

군산시과등에두는업무담당의명칭및직급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09년 6월 30일

군산시 훈령 제 248호

##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농촌관광업무담당”을 “소비자농업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농촌관광업무담당”을 “소비자농업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수출특화업무담당”을 “소득작목업무담당”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33조(농촌지원과)	①농촌지원과에 지도기획업무담당, 농촌관광업무담당, 경영교육업무담당, 생활자원업무담당을 둔다.	33조(농촌지원과)	①농촌지원과에 지도기획업무담당, <u>소비자농업업무담당</u> , 경영교육업무담당, 생활자원업무담당을 둔다.	
②	지도기획업무담당, 농촌관광업무담당, 경영교육업무담당, 생활자원업무담당은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생활지도사로 한다.	②	지도기획업무담당, <u>소비자농업업무담당</u> , 경영교육업무담당, 생활자원업무담당은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생활지도사로 한다.	
제34조(기술보급과)	①기술보급과에 작물환경업무담당, 수출특화업무담당, 연구개발업무담당을 둔다.	제34조(기술보급과)	①기술보급과에 작물환경업무담당, <u>소득작목업무담당</u> , 연구개발업무담당을 둔다.	
②	(생략)	②	(생략)	

군산시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09년 6월 30일

군산시 훈령 제 249호

### 군산시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군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군산시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산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군산시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연구
2. 기초생활권 및 도 단위 연계·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과제의 발굴 및 추진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 의원
2. 학계, 연구소 관계자
3. 시민, 사회단체, 언론인 등

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연구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연구회) ① 제3조제4항에 의한 분과연구회의 위원수는 6명 내외로 하며 연구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활성화 분과연구회
2. 교육복지 분과연구회
3. 문화관광 분과연구회
4. 새만금 분과연구회
5. 농수산 분과연구회

② 각 분과연구회별 직무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각 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연구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해당 분과회장이 검토 결과를 보고한다.

④ 분과회장은 분과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연구회의 간사는 별표 1의 업무 관련 과장이 수행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의장, 부의장, 각 분과별 회장, 분과별 간사 등 17명 내외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협의회 의장이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정된 안건을 조정·심의한다.

1. 시급한 안건
2.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안건
3.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협의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촉 당시 그 직책에 있음으로써 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 등이 그 직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직을 상실하며, 그 외 본인이 사의를 표했을 때 해촉한다.

## 제3장 운영

제9조(회의) ① 협의회 총회는 연 1회, 분과연구회는 월 1회,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시 의장 또는 분과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분과연구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0조(연구 및 지원) ①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발굴 및 정책연구를 위해 분과연구회별로 자율적 결정을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추진 할 수 있다.

② 전략산업 발굴 및 정책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연구과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의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각 분 과 별 직 무****□ 지역활성화분과 (간사 :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 개발
- 지역전략 산업 및 특화사업 발굴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업 발굴
- 지역 녹색성장 방안 연구

**□ 교육복지분과 (간사 : 인재양성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 교육진흥방안 발굴
- 지역 내 교육지원 시스템 공조 및 패러다임 구축
- 지역 복지 인프라구축 연구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업 발굴
- 지역 녹색성장 방안 연구

**□ 문화관광분과 (간사 :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
- 문화관광 및 향토자원 개발
-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발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업 발굴
- 지역 녹색성장 방안 연구

새만금분과 (간사 : 항만물류과장, 도시계획과장)

- 새만금 자원활용 군산 발전방안 연구
- 새만금 개발의 로드맵 연구
- 새만금 산업의 인프라 전략수립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업 발굴
- 지역 녹색성장 방안 연구

 농수산분과 (간사 :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 농수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 지역 농수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 중장기 농수산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업 발굴
- 지역 녹색성장 방안 연구

군산시 고시 제2009-54호

# 고 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 및 서류는 군산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09년 6월 19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오식도동 한성빌하우스 신축공사(공공임대)
2. 사업주체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9-24 한성빌딩 301호  
한성건설(주) 대표이사 송 용 상
3. 사업위치 : 군산시 오식도동 806-3번지
4. 사업내용
  - 가. 대지면적 : 31,131.1㎡
  - 나. 건축면적 : 6,487.7973㎡
  - 다. 연 면 적 : 93,899.361㎡
  - 라. 건축규모 : 아파트 12동, 14 ~ 23층, 892세대
    - 49.5545㎡형(전용면적 : 34.8194㎡) 120세대
    - 84.2505㎡형(전용면적 : 59.9816㎡) 652세대
    - 81.3122㎡형(전용면적 : 59.9640㎡) 40세대
    - 81.6743㎡형(전용면적 : 59.7932㎡) 80세대
  -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바. 사업비 : 129,859,816천원
  - 사. 사업기간 : 2009. 06 ~ 2011. 11

## 5.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시설

- 지하주차장,전기,기계실 : 21,627.2888m<sup>2</sup>
- 주민공동시설 : 355.7742m<sup>2</sup>
- 경로당,보육시설,관리사무소,문고 : 476.533m<sup>2</sup>
- 경비실,정압실 : 29.26m<sup>2</sup>
- 근린생활시설 : 746.1880m<sup>2</sup>

## 6.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실음생략)

## 7.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주체	(유)화인골드 대표 박상석	한성건설(주) 대표 송용상	
사업기간	2009.04 ~ 2011.09	2009.06 ~ 2011.11	

군산시 고시 제2009-55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주택과)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6.

군 산 시 장

1. 인 가 사 유 : 사회복지시설(구세군군산목양원)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 :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58-5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나. 명 칭 : 사회복지시설(구세군군산목양원) 증축공사
4.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면 적 : 8,000㎡
    - 2) 규 모 : 본관동 3개동 및 부속동 1개동

시설결정면적 (㎡)	건 축 연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8,000	1,818.38	2,037.33	증) 218.95	

5.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6. 사업비 : 138,140천원

7.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6. 인가일 ~ 2009. 10. 31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58-8	대지	8,000	8,000	사회복지 법인 구세군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번지	-	-	-	
합계		1필지		8,000	8,000						

9. 관계도서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09-56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주택과)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6.

군 산 시 장

1. 인 가 사 유 : 공공직업훈련시설(전북인력개발원 교육훈련센터)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 : 군산시 소룡동 1659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사업
  - 나. 명 칭 : 공공직업훈련시설(전북인력개발원 교육훈련센터) 증축공사
4.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면 적 : 39,669.6㎡
    - 2) 규 모 : 본관동 6개동 및 부속동 6개동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시설결정면적	39,669.6	39,669.6	-	
건축면적	6,957.82	7,801.78	증) 843.96	
연 면 적	19,636.04	21,106.43	증) 1,470.39	

5.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59번지

나. 사업시행자 성명 : 대한상공회의소

6. 사업비 : 1,365,400천원

7.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6. 인가일 ~ 2009. 11. 20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시 소룡동	1659	대지	39,669.6	39,669.6	대한상공 회의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	-	-	
합계		1필지		39,669.6	39,669.6						

9. 관계도서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09-58호

## 2009년 하반기 도축세 시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2항 및 군산시 시세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하반기 적용 도축세 시가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09. 7. 1

2. 결정내용

구 분		단 위	시가의 가액(원)	세 율	세 액(원)
소	한 우	마리당 (500kg)	2,700,000	시가의 10/1,000	27,000
	육 우	”	1,400,000	”	14,000
	유 우	”	700,000	”	7,000
돼 지	마리당 (100kg)	145,000	”	1,450	

2009. 6. 29.

군 산 시 장

군산시 고시 제2009-59호

# 고 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 1.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연구시설	성산면 도암리 531번지 일원	-	증)10,87 9	10,879	-	

2.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도서 : 실음생략

3.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지형도면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공고 제2009-1229호

##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추가승인 공고

군산시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추가 승인되었기 수산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1.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추가승인 내용

수면번호	어업의 종류	품 종	면적 (ha)	수면위치	개발방법
㉔	해조류양식	김	130	무녀도인근	한정어업면허
㉕	"	"	155	"	"
㉖	"	"	140	"	"
㉗	"	"	80	"	"
㉘	"	"	160	"	"
㉙	"	"	100	비안도인근	"
㉚	"	"	100	"	"
㉛	"	"	100	"	"
㉜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	50	"	"

### 2. 어장개발의 제한조건

#### [새만금사업관련(한국농어촌공사) 해역]

- ①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이후 수질 환경변화(적조발생, 염도저하, 거품띠, 공사로 인한 탁류등) 및 갑문조작 그리고 내부개발에 따른 공사 등에 따라 피해영향이 수반될 수도 있어,

- ② 어업권 면허 신청시 신청인에게 사전에 서면등으로 충분히 공지하고, 새만금사업에 따른 일체의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조건을 부하여 수산업법 제17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0조등에 의거 한정적으로 개발을 요함.
- ③ 어패류 수송차량 및 운반선박은 새만금 공사구역의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함.
- ④ 면허취소나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1월 이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피 면허자의 부담으로 자진 철거해야함.
- ⑤ 조건을 위반하거나 새만금간척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공사의 취소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함.
- 추후, 면허권자는 위의 조건에 대한 공증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조건을 면허원부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수역에서의 일체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또한 차기 면허연장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협의 시 동어장은 배제할 계획임

### **【새만금 신항만 건설관련(국토해양부) 해역】**

- ① 국토해양부에서 무녀도와 비안도리 일대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으로 검토 중이므로 향후 동 신항만 건설사업 시행시 어업권으로 인하여 사업에 지장이 초래할 때에는 자진철거하여야 하며,
- ② 수산업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한정어업면허로써 손실보상 및 손해 배상을 배제하는 조건임.

※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383( '09. 6. 17)호 관련

### 3.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가. 제출기한 :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2009. 6. 23 ~ 2009. 7. 22)

나. 제출처 : 군산시청 민원봉사과(1층) 접수창구

다. 제출서류

- 1)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2)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수산기술자에 한한다)
- 3)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4)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 5) 포기하고자 하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  
(법 제15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6) 여권 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 4. 기타사항

가. 수면별 승인된 어장위치는 우리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처 : 우리시 해양수산과 (☎ 450-4413)

2009. 6. 23.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09-1250호

## 공 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직권정정 및 과년도 가격정정주택에 대한 제5회 군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 1. 이의신청 개요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09년 1월 1일

나. 조정결정 주택수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54-24번지 등 7호

다. 직권정정 주택수 : 군산시 금동 4-8번지 등 4호

라. 가격정정 주택 : 군산시 미룡동 474-29번지

마. 조정·공시 사항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주택, 직권정정주택  
및 과년도 가격정정 주택

### 2. 개별주택가격 열람장소

군산시청 세무과(2층) 및 개별주택가격조사상황실(3층)

### 3.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결정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 과표담당(☎450-6155, 42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09 - 1251 호

#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6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 군 산 시 장

1. 공인신조 및 폐기사유 :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9. 6. 23)
2. 공인등록 연월일 : 2009. 6. 26.
3. 폐기공인 연월일 : 2009. 6. 26.
4. 등록공인 최초 사용일 : 2009. 6.
5. 등록공인 및 인영(1건)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시립도서관관리과	군산시시설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6. 폐기공인 및 인영(1건)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시립도서관관리과	군산시시설관리사업소청소년회관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군산시 공고 제2009-1258호

## 2009년 상반기 정책실명 등록 공고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2009년 상반기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 □ 2009 상반기 실명 등록 정책(사업)

(2009.1.1 ~ 2009.6.30)

등록번호	정 책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1	기록관리 시스템 설치	총 무 과	전산7급 유미선	450-4235	사업
2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총 무 과	전산7급 유미선	450-4235	사업
3	군산시립도서관 건립	인재양성과	시설7급 박용남	450-4276	사업
4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 (정보화)	인재양성과	사서7급 이현주	450-2174	사업
5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 (CI개발 및 사인시스템)	인재양성과	사서7급 이현주	450-2174	사업
6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 (RFID 시스템)	인재양성과	사서8급 이진숙	461-1521	사업
7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 (커튼류 설치사업)	인재양성과	사서7급 이현주	450-2174	사업
8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 (개관도서 구입)	인재양성과	사서8급 김혜정	450-4028	사업
9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사업 (집기 구입)	인재양성과	사서8급 이진숙	461-1521	사업

등록 번호	정 책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10	군산공설시장 재건축	지역경제과	행정7급 백일성	450-4352	사업
11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구축	지역경제과	행정7급 손수경	450-6178	사업
12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지역경제과	행정8급 이숙미	450-6232	조례
13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지역경제과	행정7급 이영수	450-4313	조례
14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지역경제과	행정7급 이영수	450-4313	규칙
15	기능인력 교육훈련센터 건립	투자지원과	행정8급 정숙현	450-4723	사업
16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투자지원과	세무8급 김용일	450-4197	조례
17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	항만물류과	시설8급 서현기	450-4383	사업
18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	농 정 과	농업9급 황문호	450-4373	사업
19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농 정 과	공업7급 김원기	450-6207	사업
20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농 정 과	농업8급 박상규	450-4375	사업
21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해양수산과	해양수산7급 백동현	450-4413	사업
22	비응항 어업용 면세유 급유시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7급 박동래	450-4412	사업
23	비응항 부잔교 시설사업	해양수산과	해양수산7급 노광석	450-4416	사업
24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해양수산과	시설8급 전창호	450-4252	사업
25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해양수산과	시설7급 이경배	450-4229	사업
26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해양수산과	시설7급 이경배	450-4229	사업
27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복지지원과	행정7급 김재숙	450-4310	사업
28	군산예술회관 신축공사	문화체육과	시설8급 김용일	450-4305	사업
29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사업	문화체육과	계약직 온혜영	450-4305	사업
30	은파자전거도로(산책로)개설	관광진흥과	시설7급 이존화	450-6325	사업
31	은파관광지 생태습지조성공사	관광진흥과	시설8급 김대환	450-6325	사업
32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	관광진흥과	시설7급 이존화	450-6325	사업

등록번호	정 책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33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과	시설8급 김민석	450-4435	사업
34	새만금 관광편의시설 구축	관광진흥과	시설8급 김민석	450-4435	사업
35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광진흥과	행정7급 김선영	450-4554	조례
36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시행규칙	환경위생과	보건7급 조경아	450-4331	규칙
37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건강조사 연구용역	환경위생과	공업7급 이도영	450-4332	연구 용역
38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청 소 과	공업8급 안현철	450-6169	사업
39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청 소 과	행정9급 정기명	450-4335	조례
40	근대역사 경관 조성사업	도시계획과	시설8급 김대영	450-4409	사업
41	연안도로~구암선 도로개설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기철	450-4445	사업
42	미장초교 진입로 개설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유청	450-4445	사업
43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	도시계획과	시설8급 장재석	450-4445	사업
44	미장동 경포천옆 도로개설	도시계획과	시설8급 장재석	450-4445	사업
45	서해공업사~소룡중기 도로개설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유청	450-4445	사업
46	현대코아워 도로개설	도시계획과	시설8급 장재석	450-4445	사업
47	동흥남동 공원부근 도로개설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유청	450-4445	사업
48	신평동 월명@~군산중 도로개설	도시계획과	시설8급 장재석	450-4445	사업
49	미룡동 오복마트주변 도로개설	도시계획과	시설8급 장재석	450-4445	사업
50	옥구소도읍 주변 도로개설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기철	450-4445	사업
51	삼학동 조양슈퍼옆 도로개설	도시계획과	시설8급 장재석	450-4445	사업
52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기철	450-4445	사업
53	오리알 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	도시계획과	시설8급 문 권	450-4445	사업
54	서수아이~용성간 도로개설	도시계획과	시설8급 장재석	450-4445	사업
55	미성동 타운~갈마마을 도로개설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유청	450-4445	사업
56	송창17통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유청	450-4445	사업

등록번호	정 책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57	소룡6통 소로개설공사	도시계획과	시설8급 장재석	450-4445	사업
58	당북사거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과	시설8급 문 권	450-4445	사업
59	월명생태통로 조성공사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기철	450-4445	사업
60	임피남상마을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유청	450-4445	사업
61	중앙동 중동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유청	450-4445	사업
62	지방공단~제4토지간 도로개설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기철	450-4445	사업
63	문화동 군산상고옆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유청	450-4445	사업
64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계획과	시설7급 이기철	450-4445	사업
65	영동상가 주변 활성화 사업	도시계획과	시설8급 김대영	450-4409	사업
66	군산시 경관조례	도시계획과	시설9급 박진식	450-6258	조례
67	신역세권 명품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과	시설8급 조현섭	450-4446	사업
68	조선인프라 구축 및 지장물 정비	건 설 과	시설7급 이원실	450-4355	사업
69	월포~원서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건 설 과	시설7급 백운초	450-4487	사업
70	야오선(군도8호) 도로 확포장 공사	건 설 과	시설7급 백운초	450-4487	사업
71	옥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건 설 과	시설7급 백운초	450-4487	사업
72	성산도암~내흥동간 도로 확포장사업	건 설 과	시설7급 이원실	450-4355	사업
73	금강철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건 설 과	시설7급 황은호	450-4371	사업
74	간치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건 설 과	시설7급 황은호	450-4371	사업
75	뜰아름 전원마을 조성사업	건 설 과	시설7급 황은호	450-4371	사업
76	주요간선도로 디자인 가로등 설치	건 설 과	공업7급 김근배	450-4488	사업
77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건 설 과	공업7급 김근배	450-4488	조례
78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영사업과	시설7급 양중호	450-4448	사업
79	수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공영사업과	시설7급 김지영	450-4276	사업
80	추모관 증축공사	공영사업과	시설7급 서해성	450-4282	사업

등록번호	정 책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81	비용도 군부대 부지매입	공영사업과	시설7급 이정규	450-4434	사업
82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영사업과	행정7급 강희경	450-6512	조례
83	오룡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 축 과	시설7급 오흥재	450-4476	사업
84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건 축 과	시설7급 김정웅	450-4474	사업
85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건 축 과	시설7급 박상열	450-4458	조례
86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통행정과	계약직 장종철	450-4365	조례
8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통행정과	계약직 장종철	450-4365	조례
88	상흥천 소하천 정비사업	재난관리과	시설8급 진승섭	450-4494	사업
89	외무장천 소하천 정비사업	재난관리과	시설8급 진승섭	450-4494	사업
90	해망9통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관리과	시설8급 권종득	450-4497	사업
91	개야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관리과	시설8급 오근엽	450-6253	사업
92	선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관리과	시설8급 권종득	450-4497	사업
93	동흥남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관리과	시설8급 권종득	450-4497	사업
94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	토지정보과	시설7급 정길영	450-6083	사업
95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보 건 소	보건7급 문다해	450-6550	사업
96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수 도 과	시설8급 고승민	450-4523	사업
97	어청도 저수지 축조 공사	수 도 과	시설8급 허준선	450-4523	사업
98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수 도 과	기능8급 박성우	450-4522	조례
99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수 도 과	시설8급 허준선	450-4523	조례
100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 수 과	시설7급 한상봉	450-4537	사업
101	산북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 수 과	시설7급 한상봉	450-4537	사업
102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 수 과	행정8급 김경남	450-4536	조례
103	제46회 도민체전대비 시설물 보수공사	체육시설 관리과	시설7급 정병기	452-2978	사업
104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공사	청소년회관 관리과	별정7급 안경열	450-6576	사업

군산시 공고 제2009-1260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공람공고

## - 연구 시설 -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입안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6. 30.

### 군 산 시 장

1. 공람사항 :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안”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0-4446, Fax. 063-452-8171)
4. 입안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연구시설	군산시 개정동 32-4번지 일원	-	증)5,106	5,106	-	

5.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서 및 계획설명서 : 실음 생략 (공람장소 비치)
6. 관계도서를 공람 장소에 비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 공고 제 2009-1234호

# 공 고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 2. 주요제정 내용

#### 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안 제3조)

- 1대의 화물차량을 소유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7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전화(063)450-4366 팩스(063)450-6404]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관리담당 고석동 [전화(063)450-4366] , 담당자 장영복 [전화(063)450-4366]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군산시장은 제2조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09-1252호

## 공 고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2009. 6. 10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244호로 시달됨에 따라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개정 표준안과 우리시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방법 개정 (제3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호)

- 1).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 ⇒ 경쟁방법에 의하여 변경
- 2).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

나.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수의경쟁 평가기준 신설 (안 제4조제2항)

1). 수의방법 금고지정 ⇒ 제4조제1항 각호 고려 적격성 여부 심의

다. 군산시금고선정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변경 (제5조)

1). 9인이내 위원 ⇒ 9명이상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인원 변경

라. 약정체결기간 10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변경 (제7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44조

나. 개정 조례안

다. 신·구조문 대비표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징수과 (전화063-450-6133, 팩스063-453-9183)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 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 2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1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금고지정방법) ①시장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군산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li> <li>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 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li> <li>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②~③(생략)</p>	<p>제3조(금고지정방법) ① <u>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u></li> <li><u>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 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li> </ol>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p> <p>①(생략)</p> <p>&lt;신설&gt;</p> <p>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p> <p>①(현행과 같음)</p> <p>② <u>제3조제1항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u></p> <p>③ ----- <u>심의위원회</u> -----.</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p> <p>③(생략)</p> <p>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2.~4.(생략)</p> <p>④ 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능 수행 시 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p> <p>⑤~⑥(생략)</p>	<p>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 ----- <u>군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u>를-----.</p> <p>② <u>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 2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1. <u>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u></p> <p>2.~4.(현행과 같음)</p> <p>④ <u>심의위원회</u> ----- -----</p> <p>⑤~⑥(현행과 같음)</p>
<p>제7조(공표·약정) ①(생략)</p> <p>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을 체결 한다.</p> <p>③(생략)</p>	<p>제7조(공표·약정) ①(현행과 같음)</p> <p>② ----- -----<u>20일 이내</u>-----.</p> <p>③</p>